심사보고서

의 안 명	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의안번호	제22호
심사일자	2026. 10. 15.

위원장 전 정 (인)

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

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 (우편번호 05584) / Tel : (02)2147-3600 / Fax : (02)2147-3956

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22

2026년 10월 15일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10. 1. 송파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6. 10. 7.

다. 상정일자: 2026. 10. 15. 제335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

2. 제안설명 요지 (임영천 자치행정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를 보다 폭넓게 발굴·포상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봉사·참여 분위기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부문별 시상 인원 변경 및 띄어쓰기 등 맞춤법 표기를 정비(안 제3조제2항)

2) 시상 등 관련 조항 정비(안 제5조)

3) 조항 삭제(안 제6조)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

○ 예산조치: 필요시 예산조치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○ 관련부서 사전협의: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, 여성보육과(성별영향평가), 기획예산과(규제사전심사)

○ 기　　타

(1) 개정문안,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, 관계법규 : 별첨
(2) 입법예고: 2026. 9. 9.~ 9.29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손지훈)

○ **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은 2026년 10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, 의안번호 제22호로 접수,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○ **본 일부개정조례안**은 송파구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를 보다 폭넓게 발굴·시상하고, 일부 부문의 시상 인원을 확대하는 한편, 구민상 시상에 따른 수여 물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구민상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○ **주요 내용**

- **안 제3조제2항**은 현행 '각 부문별 2명(또는 단체) 이내'로 규정된 구민상 시상인원을 조정하여, 효행 및 모범청소년 부문은 2명(또는 단체) 이내로 유지하되, 그 외 부문은 3명으로 확대하여 구민상 전체 시상인원을 현행 15명 또는 단체 이내에서 20명 또는 단체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.

- **안 제5조**는 제목을 개정하여 수상자에게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**안 제6조**에서 상패 및 메달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시상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, 기존의 '상패 및 메달'이라는 수여물품을 '상패 등'으로 변경하여 실제 시상 여건에 맞추고자 하는 사항임.

- 본 **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은 지역사회 발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를 보다 폭넓게 발굴·포상하기 위하여 구민상의 시상인원을 조정하고, 시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 다만, 시상인원의 확대가 수상자의 양적 증가에만 초점을 두지 않도록 후보자의 공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.

 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시상인원 확대 및 시상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구민상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,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의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적정하게 작성·제출된 안건임을 **검토보고**드림.

4. 질의 및 답변(요지)

【질의】 박지효 위원

○ 타구의 경우, 부문 수가 더 많은 곳도 있는데, 부문별 인원수를 늘리는 것보다 부문 수를 늘리고, 조례에 중복 수상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어떠한지?

【답변】 임영천 자치행정과장

○ 대부분의 구는 6~8개 부문으로 하고 있고, 중복 수상 제한에 대한 내용은 내부 방침으로 규정하여 중복 수상을 방지하고 있음.

【질의】 정성일 위원

○ 시상인원 확대 사유는?

○ 희소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, 이에 대한 의견은?

【답변】 임영천 자치행정과장

○ 지역별 봉사자가 많고, 신청자가 많은 부문에 대한 시상인원을 확대하여 공적을 기리고자 함.

○ 현재 시상인원은 전체 송파구민의 0.0027%이고, 인원 확대를 하면 0.0036%로 증가하는 수준으로, 희소성을 크게 해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.

【질의】 조용근 위원

○ 구민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는지?

【답변】 임영천 자치행정과장

○ 회의록은 공개하고 있지 않음.

5. 심사결과: **부결(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)**